

# 아름샘봉사단규정

(명칭변경 2016.05.24.)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적용)** 이 규정은 아름샘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명칭은 가천대학교 아름샘봉사단(이하 ‘봉사단’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**제3조(목적·사업)** 봉사단은 사회봉사활동 장려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봉사활동계획수립
2. 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교육훈련
3. 사회봉사 교과목 관리 및 운영(신설 2018.08.23.)
4. 지역사회와 연계 및 봉사 기관 선정
5. 봉사활동 지도, 교육 및 평가 및 실적관리
6. 봉사활동 홍보 출판 사업
7. 기타 대학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

**제4조(소재)** 봉사단은 가천대학교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조 직

**제5조(단장)** ①봉사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.

②단장은 봉사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부단장)** ①봉사단에 부단장을 두며 부단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한다. (개정 2017.12.20.)

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사무직원)** 봉사단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**제8조(자치기구)** 봉사단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4-1-20~2 제4편 부속기관

**제9조**(운영위원회) 봉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**(구성) ①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.

②위원장은 단장이 되며, 단장 부재시는 부단장이 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.

④직원 1인을 간사로 보하여 행정 지원토록 한다.

**제11조**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2조**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봉사 활동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
②봉사 활동의 장·단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③지역사회와 대학사회봉사 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
④교직원, 학생, 봉사활동의 지원사항

⑤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⑥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⑦기타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3조**(재정) 봉사단의 재정은 교비와 외부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**(회계년도) 봉사단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